

「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 
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 
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4. 12(목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4. 19(목)

다. 상정일자 : 2012. 4. 26(목)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관광경제과장)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개정(2012.1.17)에 따른 인용 근거 조항 재정비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(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신설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역서민 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.
-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근거 조항 재정비 함(안 제14조의 2)
  -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
  - 의무휴업일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준용하여 배치부서의 장이 관리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 상권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
  -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 하였고
  -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근거하면서 지역주민 상권 보호와 준대규모 점포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  - 다만,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지정과 더불어 지역별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상권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